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총무과	1

(2013. 11. 20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
[전문위원 김 은 모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안 건 명

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11월 15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가. 2013년 11월 19일

4. 관련근거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

나. 「지방공무원법(법률 제11531호)」 부칙 제4조(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및 제5조(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)

다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」 제24조(정원의 관리) 부터 제30조(정원의 규정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< 개정이유 >

-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3. 12. 12.부터 개정된 「지방자치법」 시행으로 공무원 직종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안전행정부 공무원 직종개편 가이드 라인 기준에 맞게 기능직을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, 계약직을 임기제 공무원으로, 별정직 공무원 중 일부를 일반직과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는 등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.

< 주요내용 >

- (1)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직종개편에 따라 신설된 “지방전문경력관” 직위를 명시함.
- (2) 안 별표1에서는 정원책정기준에서 기능직을 삭제하고 일반직 비율에 포함함.
- (3) 안 별표2에서는 직종개편 후의 일반직, 연구직,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책정함.
- (4) 안 별표3에서는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.

【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 】

구 분	총 계	정무직	일 반 직				별 정 직			기능직	연구직
			소 계	5급 이상	6급 이하	전 문 경 력 관	소 계	5급 상 당	6급상 당 이하		
현 행	1,274	1	1,031	65	966	<신설>	15	2	13	227	-
개 정	1,274	1	1,267	65	1,201	1	5	2	3	<삭제>	1
증 감	-	-	+236	-	+235	+1	△10	-	△10	△227	+1

<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조례 개정 내용 >

- 기능직(227명) => 일반직(행정직군, 기술직군, 관리운영직군)으로 전환
 1. 일반직(행정직군, 기술직군)으로 전환(143명) : 4개 직렬(방호, 운전, 위생, 조무)
 2. 일반직(관리운영직군)으로 전환(84명) : 4개 직렬(전기, 기계, 농림, 사무)
- 계약직(23명) =>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
- 별정직(15명)
 - => 비서·비서관, 의회전문위원(5명) : 별정직 존치
 - => 전문경력관 전환(1명) : 민방위·화생방 관리원
 - => 일반직 유사직렬 전환(5명) : 체육지도사, 광고물관리원, 영양사
 - => 일반직 구의회 속기직렬 신설 전환(4명)

[검토의견]

-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능직과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별정직에 대한 용어를 새로 정의하였으며, 공무원 직종개편 추진에 따른 직종개편 시행일인 2013.12.12.에 맞추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과 「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·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(안전행정부)」에도 저촉됨이 없고, 2013.11.7. ~ 2013.11.11.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관련부서에서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이 공포된 이후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인 2013.12.12. 이전까지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은 물론 이후 추진일정에 따른 단계별 이행절차를 준수하여 공무원 직종개편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.

관 련 근 거

지 방 자 치 법

- 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지방공무원법(법률 제11531호)

- 제4조(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, 직렬, 계급 및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이 법 시행 후 제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, 직렬, 계급, 직급 및 근무형태,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·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·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, 그 밖의 계약직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직군, 직렬, 계급, 직급 등 인사 관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 계약한 기간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,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채용될 당시 계약에 따른다.

제5조(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직공무원 임용 시험, 비서관·비서를 제외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부칙 제4조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각각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.

② 이 법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임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칙 제4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.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

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시·도지사는 그 조사·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, 기관별, 직급별,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 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. 유사·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. 업무의 성질상 법인,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④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해당 시·도와 관할 시·군·구간 또는 관할 시·군·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 2. 본청·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. 지방공립대학

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